외국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인 정신착란 삿태에서 창문을 통하여 아래쪽으로 뛰어내려 사맛한 것은 업무와 삿닷식과관계가 있는 재해로 심정된다

[재판요지]
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1999.12.31.법률 제 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제4조 제1호 소정의 업 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 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 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 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 이에는이과관계가존재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

또한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,그 인과관계는 반 드시 의학적 ·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,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, 발 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제반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 단되는경우에도그입증이 있다고보아야 할것이다.

[주 문]

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

[이 유]
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1999, 12, 31 법률제 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제4조 제1호 소정의 업 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

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 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 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 이에는이과관계가존재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.

또한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,그 인과관계는 반 드시 의학적 ·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.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.발 병경위,질병의내용,치료의경과등제반사정을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 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(1989.7.25.대법 88누10947 판결 1991.11.8 대 법 91누3727 판결 2000.5 12 대법 99두11424 판 결등참조)

1. 인정 사실

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 그채용증거들을 종 합하여 망 ○○○의 소외 회사에서의 직책 업무내용과 특히 폴란드소재 자동차 공장에 LAN시스템 구축을 위 하여 출국하여 근무하면서 겪게된 프로젝트에 대한 심 적부담 통과지연등으로 이한 공기손실 보전을 위한 연 장근무 외국의 특수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망 직전까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사실과 1997.65 01 00경 바르샤바소재아파트4층의 숙소에

서약10m아래비닥으로뛰어내려두개골골절상등을 입고사망한사실및스트레스와정신과적질환과의상 관관계등에관하여 그판시와같이 인정을하고난다음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는 타인이 관여하 였을가능성이나 범죄행위는 없었던 점 망인은 안정된 직장에근무하면서그중에서도비중이큰이사건프로 젝트의 팀장을 맡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었고 처와 2녀 를 두 기족의 가장으로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으며 그들에게 줄귀국선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을뿐이니 라이사건이전에정신병력도없었으므로망인에게자 살을할만한다른특별한시정이있었던것으로는보이 지아니하는점등이 인정된다.

망인은 외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업무지연 으로인하여 2차례에 걸쳐 출장기간을 연장하였고 비 교적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아 육체적 정신 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을 뿐이니라 이 사건 사 고 무렵에는 다른 동료가 수행하던 프로젝트 매니저 의 역할까지 맡게 되고 막바지 작업으로 인하여 업무 부닦이더욱가중되는등약4개월남짓의출장기간동 안 계속적, 반복적으로 가중되는 스트레스에 시달렸 던 점. 정신질환의 기왕력이 없는 사람도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오랜 시간동안 노출되면 악몽. 환각 등으로 정신착란과 연관되어 일시적인 현실감 상실을 유발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점, 망인이 사고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불이나는꿈을꾼것같다고진술하여이사건사고당 시 침실에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하고 탈출하기 위하여 아래로뛰어내린 것으로추정된다.

2 판결 취지

상기의 사항들을 비추어 볼 때,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국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만성적이고 반 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인 정신착라 상태 에서 일시적으로 현실감을 상실한 채 뛰어내림으로 써이사건사고를당하고결국사망에까지이른것으 로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,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

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 는바 기록과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위사 실인정과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기인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.

[결 론]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무과 같이 파결하다.

[관련 판례]

대법원 2000.5 12선고 99두11424판결]

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증이 소음 분진 등 작업장 환경에 의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됐다면 이는 업 무상재해이다

대법원 1991.11.8선고 91누3727 판결]

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 발 또는 악화된 경우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

대법원 1989.7.25선고 88누10947 판결]

업무상재해는업무와재해사이에인과관계가있어 야하고,이 관계에 대해서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 증해야한다.